

통 제

해사노동협약 인증절차

신청, 검사 및 인증 등에 관한 일반사항

문서번호 : MLC-01

개정번호 : **1**

작 성	검 토	승 인



KOREAN REGISTER

해사노동협약(MLC) 인증절차

신청, 검사 및 인증 등에 관한 일반사항

문서번호 : MLC-01

개정번호 : **1**

사단
법인

한국선급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9로 36, (우)618-814

전화 : 070-8799-8340

FAX : 070-8799-8319

개정 번호	1	해사노동협약 인증절차 신청, 검사 및 인증 등에 관한 일반사항 [I 개정기록]	페이지	1/1
----------	---	----------------------------------------------------	-----	-----

I . 개 정 기 록

개정번호	시행일자	개정내용
0 <u>1</u>	15. 07. 2011 <u>19. 01. 2015</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정- <u>적합선언서 검토 및 승인 절차 반영</u>- <u>재방문 심사 절차 반영</u>- <u>신청서 양식 변경(재방문, 기국 등록일)</u>- <u>인증시나리오 추가</u>

개정 번호	1	해사노동협약 인증절차 신청, 검사 및 인증 등에 관한 일반사항 [II 목 차]	페이지	1/1
----------	---	----------------------------------------------------	-----	-----

II. 목 차

장 번호	제 목	페이지
I	개정기록	1
II	목 차	1
1	목적 및 적용범위	1
2	용어의 정의	3
3	선박소유자의 의무 및 책임	1
4	검사원의 책임과 권한	1
5	검사 및 인증절차	8
6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겸인 및 유지	<u>2</u>
7	예비 해사노동협약검사	1
8	선원불만처리절차	<u>2</u>
<u>9</u>	<u>인증기관 변경</u>	<u>1</u>
<u>10</u>	비밀준수사항	1
	서식	1
	<u>인증검사 시나리오</u>	2

개정 번호	1	해사노동협약 인증절차 신청, 검사 및 인증 등에 관한 일반사항 [제 1 장 목 적 및 적용범위]	페이지	1/1
----------	---	--------------------------------------------------------------------	-----	-----

1. 목적 및 적용범위

1.1 목적

이 인증절차의 목적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MARITIME LABOUR CERTIFICATE)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의 인증검사 및 승인을 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절차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1.2 적용범위

1.2.1 이 규칙은 한국선급으로부터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에 의한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제2부의 승인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해서 적용한다.

1.2.2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검사의 신청, 검사범위, 검사절차,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의 승인 절차,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및 유지, 인증기관 이전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이다.

1.2.3 각국 정부가 특별히 요구하는 검사 규정이나 기타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번호	1	해사노동협약 인증절차 신청, 검사 및 인증 등에 관한 일반사항 [제 2 장 용어의 정의]	페이지	1/3
----------	---	---------------------------------------------------------	-----	-----

2. 용어의 정의

- 2.1 “2006년 해사노동협약(MLC, 2006)”이라 함은 국제노동기구 제 94 차 총회에서 결의하여 2006년 2월 23일 채택한 협약을 말한다.
- 2.2 “해사노동적합증서(MARITIME LABOUR CERTIFICATE)”라 함은, ‘2006년 해사노동 협약’의 규정 제 5.1.3 조에서 규정하는 증서로, 선박에서의 선원의 근로 및 생활조건에 관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요건을 시행하는 규칙이나 조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발급한 증서를 말한다.
- 2.3 “해사노동적합선언서(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이라 함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규정 제 5.1.3 조에서 규정하는 선언으로 책임당국이 작성하는 제 1 부(Part I) 및 선박소유자가 작성하는 제 2 부(Part II)로 구성되며, 제 1 부는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검사되어야 할 항목 및 관련 규정 등을 식별하여 표시하며, 제 2 부는 검사사항에 적합함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된 조치를 식별하고 있는 선언서를 말한다.
- 2.4 “선박소유자”라 함은 선주이거나,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맡고 그리고 다른 조직 또는 개인이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의무와 책임의 일부를 완수하는지 와는 무관하게 그 책임의 위임 시 이 협약에 따라서 선박소유자에게 부과된 의무와 책임을 맡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자, 대리인 또는 나용선자와 같은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 2.5 “책임당국”이라 함은 관련 규정의 주된 사안과 관련하여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법령, 규칙 또는 기타 명령을 발행하고 집행할 권한을 가진 장관, 정부 부서 또는 기타 당국을 말한다.
- 2.6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라 함은 최초인증검사를 받기 전 신선의 인도(New ship on delivery) 또는 국적변경 또는 선박소유자 변경의 사유로 임시인증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 2.7 “선원”이라 함은 해사노동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어떠한 직무로든 고용되거나, 종사하거나 근로하는 일체의 자를 말한다.

개정 번호	1	해사노동협약 인증절차 신청, 검사 및 인증 등에 관한 일반사항 [제 2 장 용어의 정의]	페이지	2/3
----------	---	---------------------------------------------------------	-----	-----

- 2.8 “심각한 결함(SERIOUS DEFICIENCY)” 이라 함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요건(선원의 권리를 포함)을 심각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선원의 안전, 보건, 보안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되는 결함으로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결함을 의미한다.
- 2.9 “결함(DEFICIENCY)” 이라 함은 심각한 결함이 아닌 결함으로서 선박이 해사노동협약의 요건 또는 기국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가 발견된 상황이다.
- 2.10 “관찰사항(OBSERVATION)” 이라 함은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결함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 2.11 “실질적 개조(SUBSTANTIAL CHANGES)” 라 함은 거주구역에 있어 침실 및 기타 거주구역의 크기, 난방 및 환기 시스템, 소음, 진동 및 환경요소, 위생시설, 조명, 병실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을 의미한다.
- 2.12 “연차일(ANNIVERSARY DATE)” 이라 함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 매년의 월일을 말한다.
- 2.13 “임시인증검사(Interim Inspection)” 라 함은 최초인증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선원의 근로와 생활 기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 2.14 “최초인증검사(Initial Inspection)” 라 함은 이 협약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에 따라 양호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선박소유자의 이행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최초로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 2.15 “중간인증검사(Intermediate Inspection)” 라 함은 선원의 근로 및 생활 기준이 지속적으로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연차일과 3연차일 사이에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 2.16 “갱신인증검사(Renewal Inspection)” 라 함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에 새로운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번호	1	해사노동협약 인증절차 신청, 검사 및 인증 등에 관한 일반사항 [제 2 장 용어의 정의]	페이지	3/3
----------	---	---------------------------------------------------------	-----	-----

2.17 “특별인증검사(Additional Inspection)” 라 함은 선박 거주설비의 주요개조나 선박에서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 선내 근로와 생활 기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번호	1	해사노동협약 인증절차 신청, 검사 및 인증 등에 관한 일반사항 [제 3 장 선박소유자의 의무 및 책임]	페이지	1/1
----------	---	-----------------------------------------------------------------	-----	-----

3. 선박소유자의 의무 및 책임

- 3.1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인증검사 및 인증은 해상에서의 근로 및 거주조건에 관련된 국내·외의 규정을 따르는데 있어서 선박소유자, 사관 또는 선원의 의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 3.2 선박소유자는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 사이에 국내 요건이 지속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택된 조치 및 계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제안된 조치를 식별하기 위하여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3.3 선박소유자는 해사노동협약의 검사 및 인증 유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 .1 검사 및 인증 요건에 대한 목적 및 범위에 관련된 종사원과 단위 조직의 정보 제공
 - .2 검사원을 보조하기 위한 책임자의 지정
 - .3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검사 및 인증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원이 필요로 하는 자원의 제공
 - .4 검사원에 의해 요구된 자료 및 정보의 열람과 검사구역으로의 출입 허용
 - .5 검사 및 인증 목적 달성을 위한 검사 협조
 - .6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1부 및 제2부에 명시된 요건의 이행
 - .7 시행된 시정조치의 유효성 검증

3.4 검사기록 유지

선박소유자는 모든 검사 기록을 최소한 5년간 선내에 유지 및 게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번호	1	해사노동협약 인증절차 신청, 검사 및 인증 등에 관한 일반사항 [제 4장 검사원의 책임과 권한]	페이지	1/1
----------	---	-------------------------------------------------------------	-----	-----

4. 검사원의 책임과 권한

4.1 적절한 자격을 가진 해사노동협약 검사원은 다음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 .1 ‘2006년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를 위하여 해당 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권한. 단, 인증검사를 개시할 때 선장 또는 담당책임자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선원 또는 선원 대표자에게 임검 사실을 통보
- .2 선장, 선원 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의 대표를 포함한 기타의 사람에게, 그 사람이 요청하였을 수 있는 증인의 입회하에 법령의 적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질문
- .3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시행하는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체의 도서, 선박일지, 등록부, 증명서 또는 기타의 문서, 또는 검사받는 사항과 직접적으로 정보의 제출 요구
- .4 ‘2006년 해사노동협약’을 이행하는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하는 것
- .5 분석을 목적으로 제품, 화물, 음료수, 식품과 사용 또는 취급된 재료 및 물질의 견본을 수집 또는 제거하는 것
- .6 검사 후에 승선 중인 자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함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선장의 즉각적인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
- .7 책임당국에 기준의 법령에 구체적으로 망라하지 못한 결함 또는 남용에 대하여 경고하고, 법령의 개선을 제안하는 것
- .8 법령에 규정된 경우와 방법으로 선원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관하여 책임당국에 보고하는 것
- .9 필요한 경우, 검사업무의 기술적 분야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적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전문가 초청을 요구
- .10 결함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

개정 번호	1	해사노동협약 인증절차 신청, 검사 및 인증 등에 관한 일반사항 [제 5 장 검사 및 인증절차]	페이지	1/8
----------	---	------------------------------------------------------------	-----	-----

5. 검사 및 인증 절차

5.1 일반사항

5.1.1 해사노동협약의 인증검사는 기국 정부가 발급한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
와 기국 또는 한국선급이 검토 또는 승인한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를
소지한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5.1.2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는 QSCS 인증을 받고 있는 선급에 등록된 선박만을 대상으로 한다. 단, 해사노동협약의 검사권을 기국 정부로부터 한국선급 만이 유일하게 위임 받은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

5.1.3 선박의 근로 및 생활조건에 대한 검사 및 인증업무는 한국선급의 소속 검사원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업무의 보조를 위하여 적절한 자격을 가진 기술적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5.1.4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각 장에서 검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수행한다. 선박을 등록하거나 재 등록하는 경우, 또는 선원의 거주설비를 실질적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도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5.1.5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는 통상의 운항상태에 따른 모든 선원이 선박에 배승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임시인증검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승무정원증서(Safe Manning Certificate)에 준하는 선원이 배승된 경우라면 시행 가능하다.

5.2 검사신청

5.2.1 검사 신청은 첨부의 서식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 신청서(SA-07-01)’를 이용하여 신청한다. 인증검사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 져야 한다.

5.2.2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를 한국선급으로부터 검토 및 승인 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제5.3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를 한국선급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번호	1	해사노동협약 인증절차 신청, 검사 및 인증 등에 관한 일반사항 [제 5 장 검사 및 인증절차]	페이지	2/8
----------	---	------------------------------------------------------------	-----	-----

5.3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의 검토 및 승인

5.3.1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는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를 최초로 작성하였을 때, 또는 승인된 해사노동적합선언서가 개정되었을 때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5.3.2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의 검토 및 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책임당국이 발급한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의 사본과 함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작성된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를 한국선급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에서 ISM 시스템문서를 인용한 경우, 그 문서의 해당 부분
- 해당 선박의 선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사본(해당되는 경우)
- 해당 선박의 선원에게 적용되는 표준 선원근로계약서
- 선원근로계약서에 선박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 선박소유자와 그 대리인간의 선원공급계약서 또는 유사한 문서의 사본
- 선내불만처리절차

5.3.3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는 선박의 사용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3.4 한국선급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의 검토 및 승인 신청을 접수한 경우, 관련 문서를 검토 후 접수증을 선박소유자에게 송부한다.

5.3.5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의 검토가 완료되면, 한국선급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의 각장의 우측 상단에 KR Endorse인을 날인하고 검토완료통보서를 작성하여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와 함께 선박소유자에게 송부한다.

5.3.6 임시 인증검사는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승인을 위해 제출하였다는 5.3.4항의 접수증을 바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최초 인증검사는 제5.3.5항과 같이 검토 완료 후 진행한다.

5.3.7 최초인증검사를 시행한 결과,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가 검사와 검사 사이에 국내 요건에 계속하여 적합하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와 계속적인 개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된 조치들이 적절히 시행되고 있

개정 번호	1	해사노동협약 인증절차 신청, 검사 및 인증 등에 관한 일반사항 [제 5 장 검사 및 인증절차]	페이지	3/8
----------	---	------------------------------------------------------------	-----	-----

다고 판단되면 인증검사팀장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를 승인한다.

5.3.8 승인된 해사노동적합선언서가 절차의 변경, 선명 변경, 주소의 변경 등의 사유로 개정되었을 때 재 승인을 위해 한국선급에 제출되어야 한다. 해사 노동협약의 요건을 이행하는 주요한 내용이 개정되는 경우, 현장 확인을 위해 제5.10항의 특별인증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4 인증검사 절차

5.4.1 거주설비에 대한 도면검토 및 승인

5.4.1.1 선박의 거주설비에 대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요건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발효일 이후에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한다.

5.4.1.2 거주설비에 대한 검사가 적용되는 상기 선박은, 선박의 구조 및 설비가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거주설비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선박 건조에 착수하기 전에 해당 선박의 설계도면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5.4.1.3 선원의 거주설비가 실질적으로 개조되는 경우에도, 상기 절차에 따른 도면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5.5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 진행

5.5.1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 계획

5.5.1.1 인증검사의 범위는 해당 선박에서 ‘2006년 해사노동협약’과 관련된 선원의 근로 및 생활조건을 대상으로 한다.

5.5.1.2 원칙적으로 한국선급은 검사를 수행하기 2일전까지 검사계획을 통보한다. 단, 선박 운항일정의 급작스런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5.1.3 인증검사팀에는 선박소유자의 동의 하에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원이 되기 위해 훈련 중인 검사원이 포함될 수 있다.

개정 번호	1	해사노동협약 인증절차 신청, 검사 및 인증 등에 관한 일반사항 [제 5 장 검사 및 인증절차]	페이지	4/8
----------	---	------------------------------------------------------------	-----	-----

5.5.2 시작회의

인증검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시작회의로 시작한다.

- .1 선박의 상급사관에게 검사원 소개
- .2 해사노동협약검사 및 인증범위 설명
- .3 검사 수행방법 및 절차의 개요 설명
- .4 검사 및 인증을 위해 필요한 자원, 문서 및 시설의 확인
- .5 기타 검사와 관련된 제반 고려사항 등의 확인

5.5.3 인증검사업무 수행

5.5.3.1 검사원은 해당 선박 및 선박에서의 활동이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확인한다.

- .1 2006년 해사노동협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 .2 선박에서의 근로 및 생활조건 등이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 및 제2부에 따라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 .3 선원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조건이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 .4 거주설비 및 오락시설이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5.5.3.2 인증검사는 관련 문서의 확인, 선원과의 면담, 해당 설비에 대한 표본점검 그리고/또는 검사원이 선박이 해사노동협약의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기타 수단을 통해서 수행될 수 있다.

5.5.4 대표 표본의 수집 및 분석

5.5.4.1 생산품, 화물, 식수, 식량 및 사용되는 재료의 표본 수집 또는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 대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검사원은 표본을 수집하거나 옮기지 아니한다.

5.5.4.2 제5.5.4.1에서의 표본이 수집된 경우, 대표 표본을 검사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검사원은 표본이 수집된 경우, 수집된 표본에 대

개정 번호	1	해사노동협약 인증절차 신청, 검사 및 인증 등에 관한 일반사항 [제 5 장 검사 및 인증절차]	페이지	5/8
----------	---	------------------------------------------------------------	-----	-----

한 수량, 위치 및 시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5.5.4.3 표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국 정부가 인정한 또는 공
신력 있는 실험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표본 분석을 위한 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

5.5.5 급여의 지급

5.5.5.1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검사원은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금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 .1 선원의 근로계약서 상의 총 임금 지급 여부
- .2 임금이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
- .3 최저임금, 유급휴가, 시간외 수당 등

5.5.5.2 상기 5.5.5.1항의 검증을 위하여 검사원은 선원 면담을 시행하거나 선상에서 관련 문서를 검토할 수 있다.

5.6 해사노동협약 최초인증검사

5.6.1 해사노동협약 최초인증검사는 해사노동적합증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선박으로 ‘2006년 해사노동협약’ 을 적용 받는 선박 또는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최초인증검사는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만료일 이전에 시행되어야 한다.

5.6.2 최초인증검사의 범위 및 목적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 의 부록 A5-1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들이 ‘2006년 해사노동협약’ 에 따른 기국의 해당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다.

5.7 해사노동협약 중간인증검사

5.7.1 중간인증검사의 목적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 에 따른 기국의 해당 법령에 계속해서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검사범위와 깊이는 개신인증검사와 동일하다.

개정 번호	1	해사노동협약 인증절차 신청, 검사 및 인증 등에 관한 일반사항 [제 5 장 검사 및 인증절차]	페이지	6/8
----------	---	------------------------------------------------------------	-----	-----

5.7.2 중간인증검사는, 단 1회의 중간인증검사가 시행되는 경우,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연차일 사이에 시행되어야 한다.

5.7.3 중간인증검사가 만족스럽게 완료된 경우, 검사원은 해사노동적합증서에 배서하여야 한다.

5.8 해사노동협약 갱신인증검사

5.8.1 갱신인증검사는 근로 및 생활조건 관련한 모든 요건을 검사한다.

5.8.2 갱신인증검사는 현 인증서의 만료일 전 3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만일, 갱신인증검사가 현 증서의 만료일 3월 이전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갱신인증검사의 완료일로부터 기산한다.

5.9 해사노동협약 임시인증검사

5.9.1 해사노동적합증서는 다음의 경우에 임시적으로 발행될 수 있다.

- .1 신조 선박의 인도 시;
- .2 선박의 기국 변경 시; 또는
- .3 선박소유자가 새로운 선박에 대한 운항 책임을 맡은 경우

5.9.2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는 6월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발급한다.

5.9.3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는 다음 사항을 검증한 후에만 발급될 수 있다:

- .1 해사노동협약에 적합한 절차(필요시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사본)를 보유하고 있을 것
- .2 선장이 해사노동협약의 요건과 이행책임을 숙지하고 있을 것
- .3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승인받기 위하여 주관청 또는 대행기관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였을 것
- .4 선원의 생활 및 근로 조건을 가능한 범위까지 검사
단, 선내 거주설비 및 오락시설 검사의 경우 주관청 또는 대행기관에서 발급한 거주설비 검사증서 또는 적합확인서에 대한 검토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번호	1	해사노동협약 인증절차 신청, 검사 및 인증 등에 관한 일반사항 [제 5 장 검사 및 인증절차]	페이지	7/8
----------	---	------------------------------------------------------------	-----	-----

5.9.4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가 발급된 최초 6월 이후에는 어떠한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도 발급 될 수 없다.

5.10 해사노동협약 특별인증검사

5.10.1 다음의 경우 특별(Additional)인증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 .1 거주구역의 실질적 개조가 있는 경우
- .2 PSC 출항정지 또는 기타의 이유로 기국의 지시가 있는 경우 또는
- .3 해사노동협약 인증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 .4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의 주요한 절차가 개정되어 현장확인이 필요
한 경우 등

5.11 재방문 인증검사

5.11.1 재방문 인증검사는 해당 결함의 종결처리와 관련된 사항에만 적용한다.

5.12 인증검사보고서

5.12.1 한국선급은 검사를 완료한 후 인증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영어로 작성하며, 검사를 수행한 범위를 식별하여야 한다. 단, 심각한 결함, 결함 및 관찰사항에 대한 보고서는 검사원이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동안 작성하여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12.2 한국선급은 인증검사보고서를 책임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선급은 보고서 사본을 선박소유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선원 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에게도 사본 1부를 송부한다. 선박소유자는 선장과 선내게시용으로 보고서 사본 2부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12.3 한국선급은 검사 및 인증요건에 대한 효과적인 유지를 보장하고 한국선급으로서의 책무가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인증검사보고서를 데이터베이스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13 결함사항의 처리

5.13.1 선박소유자의 책임자(선장 포함)는 인증검사 시 식별된 결함사항에 대한

개정 번호	1	해사노동협약 인증절차 신청, 검사 및 인증 등에 관한 일반사항 [제 5 장 검사 및 인증절차]	페이지	8/8
----------	---	------------------------------------------------------------	-----	-----

시정조치 내용과 기한을 확인하여야 한다.

- 5.1③.2 선박소유자의 책임자 및 선장은 한국선급에 의해 식별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결정하고 이행할 책임이 있다. 시정조치 결과는 합의된 기간 내에 한국선급에 제출되어야 하며, 시정조치는 결함을 발견한 날로부터 3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이행되어야 한다.
- 5.1③.3 심각한 결함이 식별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자는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즉각적인 시정조치는 해당 결함이 종결 처리되거나 경감되는 것을 말한다. 심각한 결함이 경감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작성한 시정조치 계획이 주관청에 의해 인정되고, 인증 검사팀장이 판단하기에 경감이 인정될 수준까지 시정되어야 한다. 심각한 결함이 경감된 경우 제5.12.2항과 같이 최대 3월의 시정조치 기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결함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는 반드시 출항 전까지 시행되어야 한다.
- 5.1③.4 심각한 결함으로 경감된 경우, 효과적인 시정조치의 검증을 위해 합의된 시정조치 기간 내에 최소 1회의 재방문인증검사가 시행되어야 한다.
- 5.1③.5 모든 결함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또는 검인 전에 시정조치 계획이 인증검사팀장에게 제출되고 인정되어야 한다.
- 5.1③.6 선박소유자의 책임자가 결함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이나 유지에 대한 결정은 보류된다.
- 5.1③.7 시정조치의 유효성이 확인된 경우, 한국선급은 “시정조치 완료 통보”를 선박소유자에게 송부한다.
- 5.1③.8 관찰사항이 식별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이를 검토하여야 하나 시정조치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개정 번호	1	해사노동협약 인증절차 신청, 검사 및 인증 등에 관한 일반사항 [제 6 장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검인 및 유지]	페이지	1/2
----------	---	------------------------------------------------------------------------	-----	-----

6.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검인 및 유지

6.1 발급일 및 유효기간

6.1.1 해사노동적합증서는 선박에서의 선원의 근로 및 생활조건에 관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요건을 시행하는 기국의 법령 및 기타 조치가 검사되고 충족됨이 확인된 경우 발급한다.

6.1.2 해사노동적합증서는 최초인증검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만일, 최초인증검사 중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모든 심각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가 시행되고 유효성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6.1.3 해사노동적합증서는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발행된다. 단,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는 6월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발행된다.

6.1.4 갱신인증검사가 현 증서의 만료일 전 3월 이내에 완료되었을 때, 새로운 해사노동적합증서는 갱신인증검사의 완료일로부터 현 증서의 만료일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6.1.5 갱신인증검사가 현 증서의 만료일 3월 이전에 완료되는 경우, 새로운 증서는 갱신인증검사의 완료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6.2 증서의 효력정지

6.2.1 다음의 경우에 발급된 해사노동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다.

- .1 중간인증검사가 규정된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
- .2 중간인증검사 결과 증서가 배서되지 아니한 경우
- .3 기국이 변경된 경우
- .4 선박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5 거주설비의 실질적 개조가 이루어진 경우
- .6 인증검사시 식별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가 합의된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
- .7 해결(종결 또는 경감)되지 않은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

개정 번호	1	해사노동협약 인증절차 신청, 검사 및 인증 등에 관한 일반사항 [제 6 장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견인 및 유지]	페이지	2/2
----------	---	-------------------------------------------------------------------------------	-----	-----

6.2.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증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사노동적합증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 인증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2 심각한 노사분규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3 항만국통제 검사(PSC) 결과 출항정지를 당한 경우, 출항정지를 당한 이유에 대한 심각성이나 출항정지를 당한 빈도를 고려하여 해사노동협약의 이행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기국이나 항만당국이 해당 선박에서 해사노동협약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

6.2.3 제6.2.1항 및 제6.2.2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한국선급은 이 사실을 선박소유자, 주관청 및 기타 통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에 통보한다.

6.2.4 제6.2.1항, 제6.2.2항 및 제6.2.3항의 결과 주관청이 해사노동적합증서 취소를 승인한 경우, 또는 기타의 이유로 주관청이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취소를 지시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즉시 해사노동적합증서를 한국선급에 반납해야 한다.

6.2.5 제6.2.4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가 취소된 경우 다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인증검사가 적용된다. 단, 제6.2.1.5항에 따른 거주설비의 실질적 개조가 이루어진 경우, 제5.10.1항의 특별인증검사를 시행한다.

6.2.6 제6.2.5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가 새로 발급되는 경우에는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기존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을 승계한다.

개정 번호	1	해사노동협약 인증절차 신청, 검사 및 인증 등에 관한 일반사항 [제 7 장 예비검사]	페이지	1/1
----------	---	-------------------------------------------------------	-----	-----

7. 예비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

- 7.1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2006년 해사노동협약’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초인증검사의 형식으로 예비 해사노동협약검사를 한국선급에 요청할 수 있다.
- 7.2 예비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 결과 결함이 발생하여도 선박소유자가 해사노동협약 검사원에게 시정조치의 결과를 확인 받을 의무는 없다.
- 7.3 예비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의 결과가 해사노동협약 최초인증검사 인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해사노동협약 검사원이 선박소유자의 필요 문서를 작성해 주는 행위 등의 자문행위를 하지 않는다.

개정 번호	1	해사노동협약 인증절차 신청, 검사 및 인증 등에 관한 일반사항 [제 8 장 선원불만처리절차]	페이지	1/2
----------	---	-----------------------------------------------------------	-----	-----

8. 선원 불만처리절차

8.1 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

- 8.1.1 한국선급의 검사원은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 중 구두로 된 불만사항을 접수한 경우 불만을 제기한 선원에게 선내불만처리절차에 따라 선내 수준에서 불만을 해결하도록 권고한다. 만약 그 선원이 선내불만처리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느낄 경우(희생물화에 대한 두려움 또는 선내불만처리절차의 효과성에 대한 믿음의 부족 등의 이유) 검사원은 기국의 책임당국의 연락처, 기국과 선원의 거주국이 다른 경우 선원 거주국 책임당국의 연락처 그리고 선내에서 비밀을 유지한 채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이 선내불만처리절차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선원에게 주지 시킨다.
- 8.1.2 만약 선원이 선내불만처리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검사원에게 불만사항을 제기하고자 주장한다면, 검사원은 이를 기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만사항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불만을 제기한 선원이 서명한 경우에만 기국에 전달할 수 있음을 선원에게 알려야 한다.
- 8.1.3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 중 선원의 불만을 접수한 경우, 검사원은 불만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를 하지 않으며, 대신 선원이 선내불만처리절차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원이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추가로, 검사원은 선원의 근로 및 생활조건이 협약의 요건 및 기국의 국내법에 적합하고 선내불만처리절차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적절한 표본 크기와 검사 범위를 선택하여 선원의 불만사항을 고려하여 인증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8.1.4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 중이 아닌 경우에 서면으로 작성된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기국의 책임당국에 전달한다. 기국의 어떠한 지시가 있지 않다면 추가적으로 취할 조치는 없다.

8.2 불만사항의 보고

- 8.2.1 선원의 불만사항과 관계된 결함을 포함하여 인증검사 중 발견된 결함은 협약의 비밀유지 요건을 고려하여 인증검사 보고서상에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원이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한 불만사항은 기국에 제출하는 보고서

개정 번호	1	해사노동협약 인증절차 신청, 검사 및 인증 등에 관한 일반사항 [제 8 장 선원불만처리절차]	페이지	2/2
----------	---	-----------------------------------------------------------	-----	-----

에만 포함시킨다.

8.2.2 선원의 근로 및 생활조건에 선원의 안전, 건강 또는 보안에 명백한 위험이 될 정도로 결함이 있다고 제기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된 불만사항을 자체 없이 기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8.3 불만사항의 조사

8.3.1 한국선급은 상황에 따라 기국의 특별한 위임을 받아 선원의 불만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과 범위 등에 관해서는 기국의 지침에 따른다. 하지만 이러한 불만에 대한 해결 책임은 여전히 기국에게 있다.

개정 번호	1	해사노동협약 인증절차 신청, 검사 및 인증 등에 관한 일반사항 [제 9 장 인증기관 변경]	페이지	1/1
----------	---	----------------------------------------------------------	-----	-----

9. 인증기관 변경

9.1 QSCS 인증을 소지한 선급으로부터 발급된 해사노동적합증서를 한국선급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9.1.1 인증기관 이전 인증검사는 현장을 방문하여 시행한다.

9.1.2 인증기관 이전 인증검사는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

.1 기존의 해사노동적합증서가 효력정지 되거나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

.2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 종결되거나 경감된 상태

.3 이전의 인증기관이 시행한 인증검사가 만족스럽게 종결된 상태

.4 결함의 경우 합의된 시정조치 기한이 경과된 결함이 종결된 상태

9.1.3 인증기관 이전 인증검사는 해사노동협약 및 주관청의 모든 요건에 대하여 확인한다. 또한 현 인증기관에 의하여 시행된 최근 인증검사에서 제기된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확인한다.

9.1.4 인증기관 이전 인증검사가 다른 인증검사와 같이 신청된 경우에는 인증기관 이전관련 인증검사를 먼저 시행하고 다른 인증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9.1.5 인증기관 이전 인증검사가 만족스럽게 완료된 경우에는 한국선급은 관련 절차에 따라 새로운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한다. 새로운 해사노동적합증서는 기존 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을 승계한다. 기국에 의하여 발행된 해사노동적합증서의 경우 기국의 승인 하에 한국선급 심사원이 검인할 수 있다.

9.1.6 인증기관 이전 인증검사에서 심각한 결함이 식별되어 인증기관 이전 인증검사가 만족스럽게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한국선급은 관련 사실을 기존 인증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번호	1	해사노동협약 인증절차 신청, 검사 및 인증 등에 관한 일반사항 [제 10 장 비밀준수사항]	페이지	1/1
----------	---	----------------------------------------------------------	-----	-----

10. 비밀준수사항

10..1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주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선원의 근로 및 생활조건과 관련하여 위험, 결함 또는 법령의 위반사실을 신고한 불평 및 불만사항의 제공자, 또한 그러한 불평 및 불만 신고의 결과로서 검사를 행하였다는 것을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 대표에게 암시하여서도 안 된다.

.2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정보

개정 번호	1	해사노동협약 인증절차 신청, 검사 및 인증 등에 관한 일반사항 [서식]	페이지	1/1
----------	---	-----------------------------------------------	-----	-----

서식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 신청서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 신청서



한국선급(Korean Register of Shipping)

수신 : 한국선급 회장
참조 :

문서번호 :
일자 :

아래 ①, ②, ③항의 사항을 확인하고 2.항에 대하여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를 신청합니다.

- ① 신청자는 해사노동협약 인증절차에 규정된 선박소유자의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였음.
② 최초인증검사 또는 임시인증검사에 해당되는 선박은 해당 검사 신청 조건에 만족함을 확인하였음.
③ 수수료는 한국선급에서 정한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 수수료 규칙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음.

1. 신청자

선박소유자 명			
주 소			
성명 및 서명			부서
전 화		FAX	
검사료 청구 방법	() INVOICE	() 세금계산서(부가세 적용)	() 세금계산서(부가세 비적용)
검사료 청구처			

* 해당 ()란에 “○”표 하시고 사업자등록증의 내용 변경 시 필히 우리 선급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선박에 대한 상세

선 명	검사 종류 ¹⁾	선종	선적국	선원의 국적	검사 요청일
<u>기국 등록일⁴⁾</u>	<u>선급 번호</u>	<u>IMO 번호</u>	<u>총톤수</u>	<u>MLC 유효일²⁾</u>	<u>검사 장소³⁾</u>

3. 대리점 연락처 및 담당자 (별지 첨부도 가능)

1) 검사 종류

- ①DMLC Part II 승인 / ②최초 / ③중간 / ④갱신 / ⑤임시(Interim) / ⑥특별(Additional) / ⑦재방문(Re-visit)
⑧예비(Preliminary)-

* 최초인증검사 신청 시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 2 부를 주관청이 승인한 경우, 관련 증거의 사본을 첨부 바람.

* DMLC Part II 검토를 신청할 경우, 다음 서류를 첨부 바람.(메일 주소: kr-dmlc@krs.co.kr)

-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 2 부에서 ISM 시스템문서를 인용한 경우, 그 문서의 해당 부분
- 해당 선박의 선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사본, - 해당 선박의 선원에게 적용되는 표준 선원근로계약서
- 선원근로계약서에 선박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 선박소유자와 그 대리인간의 선원관리계약서 또는 유사한 문서의 사본, - 선내불만처리절차
- 신청자가 선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사노동협약에서 규정하는 선박소유자임을 나타내는 아래의 서류 추가;
- 선주가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위임한 계약서 또는 BBC 계약서
- SOLAS 협약 9 장에 규정한 회사임을 나타내는 서류 (SMC 를 KR 에서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함.)

2) 현재의 MLC 를 KR 이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 바람.

3) “항해 중”, “정박 중”, “접안 중”을 추가 표기 바람.

4) ISPS Code에 따라 발급된 Continuous Synopsis Record상 기국 등록일

선박 인증 시나리오

일련번호	시나리오	실사종류	최소심사범위	수행자	발급증서
1	<u>선명변경</u>	<u>승선 검증</u>	<p>1. 국적증서, CSR 또는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 1 부의 선명 확인</p> <p>2. 검사원이 승선 시에는 기존 증서상 선명변경 및 가능하다면 적합선언서 제 2 부의 선명 변경. 해당 사본을 본부에 송부</p> <p>3. 해사노동인증검사원(이하 “인증검사원”) 승선 시 증서 재 발행, 가능하다면 적합선언서 제 2 부 재발행</p>	<u>검사원</u> 또는 <u>인증검사원</u>	<u>1. 검사원</u> <u>기존 증서의 선명변경 및 가능하다면 적합선언서 제 2 부의 선명변경</u> <u>2. 인증검사원:</u> •기존증서의 유효기간 승계한 증서 재 발행 •가능하다면, 개정한 적합선언서 제 2 부 재 발행
2	<u>선박소유자명 변경</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선언서 제 2 부의 새로운 선박소유자명 확인 • 적합선언서 제 2 부의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확인 	<u>인증검사원</u>	•개정된 적합선언서 제 2 부 재 발행 •기존증서의 유효기간 승계한 증서 재 발행
3	<u>선박소유자 주소 변경</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선언서 제 2 부의 새로운 선박소유자의 주소 확인 • 적합선언서 제 2 부의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확인 	<u>인증검사원</u>	•개정된 적합선언서 제 2 부 재 발행 •기존증서의 유효기간 승계한 증서 재 발행
4	<u>선종 변경 – 적합선언서 제 1 부 미 변경</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종에 대한 검증 	<u>인증검사원</u>	•기존증서의 유효기간 승계한 증서 재 발행
5	<u>선종 변경 – 적합선언서 제 1 부 변경</u>	<u>특별 인증검사</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선언서 제 2 부가 적절하게 개정이 되었는지 검증 • 적합선언서 제 2 부의 개정된 조치들의 이행을 검증 	<u>인증검사원</u>	•개정된 적합선언서 제 2 부 재 발행 •기존증서의 유효기간 승계한 증서 재 발행
6	<u>선박의 구조 또는 장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u>	<u>특별인증검사</u>	<ul style="list-style-type: none"> •MLC,2006 협약 A3.1 요건 	<u>인증검사원</u>	•현존 증서 이서
7	<u>QSCS 증서를 소지하지 않은 선급으로부터 인증 기관 이전</u>	<u>최초인증검사</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LC,2006 의 모든 요건 검사 	<u>인증검사원</u>	만기 증서 발행

부록 2

선박 인증 시나리오

일련번호	시나리오	심사종류	최소심사범위	수행자	발급증서
8	<u>QSCS인증을 소지한 선급으로부터 인증기관 이전</u>	<u>특별인증검사</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인증기관의 인증검사보고서 검토 • 전 인증기관에서 지적한 모든 결합 사항 종결 	<u>인증 검사원</u>	<u>만기증서(유효기간 동일)</u>
9	<u>3 월 이상 운항에 종사하지 않은 선박</u>	<u>특별인증검사</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신 또는 중간인증심사시기 범위의 경우에는 해당 시기 인증검사; 또는 • MLC,2006 요건 	<u>인증 검사원</u>	<u>현존 증서에 검인</u>
10	<u>6 월 이상 운항에 종사하지 않은 선박</u>	<u>임시(Interim) 인증검사</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승무전원증서의 선원이 승선한 상태에서 MLC,2006 요건의 인증검사 	<u>인증 검사원</u>	<u>Interim SMC</u>
11	<u>중간인증검사기간 이후에 신청된 중간인증검사</u>	<u>중간 검사</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인증검사 범위로 확장 • 심각한 결합 식별 후 검사 중 경감 가능 • 3 개월 이내에 재방문 인증검사 시행 	<u>인증 검사원</u>	<u>현존 증서 이서란에 "Validity reinstated with scope as initial" 기입</u>

주의사항: 상기는 기국 주관청의 별도 지침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며, 별도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기국 주관청 지침에 따른다.